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83

발의연월일: 2020. 7. 20.

발 의 자:이상민·장철민·황운하

조승래・김진표・박영순

박성준 • 기동민 • 김종민

어기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연구개발투자에 있어 주요 선진국들은 민간투자가 취약한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에 중점을 두어 산업 부문보다 기초·공공·복지부문 투자비중이 높은 편인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 달리정부연구개발투자가 지나치게 산업부문에 편중되어 왔음.

최근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에 근거를 둔 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하는 등 기초과학에 대한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위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정부가 지원 운영 중인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의2와 제177조의2에 따라 연구회소관 출연연 및 IBS의 재산세와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하는 특례조항 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이 특례가 2020년 12월 31일부로 종료예정이므로 2024년까지 연장을 추진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
제)「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	제)
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과「과	
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	
한 법률」 에 따른 연구기관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	
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	
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	
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u>2020년 12월 31일</u> 까지 면제한	<u>2024년 12월 31일</u>
다.	